

과 세 연 도 :

①법 인 명	②사업자등록번호		
③구 분	☐ 주권상장법인	☐ 협회등록법인	☐ 일간신문발행법인
④대 표 자 성 명	⑤업종(영위기간)		
⑥본점 소재지	(☎ :)		

양 도 자				양 수 자			
⑦ 양도주 주명	⑧ 보유주식 수(지분율)	⑨ 양도주식 수(지분율)	⑩ 지배주 주여부	⑪ 양수주주 명(업종)	⑫ 양수주식 수(지분율)	⑬ 보유주식 수(지분율)	⑭ 특수관 계여부
합 계				합 계			

⑮인수(변제)주주명	<16>인수(변제)금액	<17>보증채무금액	<18>보유주식수(지분율)
합 계			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1. 법인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1부
2. 회계법인의 재무제표·경영합리화 가능성 확인서 1부
3. 금융기관협의회의 기업구조조정계획 타당성 확인서 1부
4.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족액 명세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

작 성 요 령

1. ⑤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 중 중분류에 따라 기입하고,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.
2. ⑦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기입하고, ⑧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기입하며, ⑨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기입하고, ⑩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기입합니다.
3. ⑪란은 법인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기입하고, 괄호안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 중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재하며, ⑫란은 양수주식수를 기입하고, ⑬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기입하며, ⑭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여부를 기입합니다.
4. ⑮란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·변제한 주주명을 기입하고, <16>란은 당해주주가 인수·변제한 금액을 기입하며, <17>란은 양도대상법인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채무를 인수·변제하는 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중 당해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을 기입하고, <18>란은 당해주주가 양수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입합니다.